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1년 6월 7일

○ 회부일자 : 2001년 6월 11일

3. 제정이유

○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대하여

○ 대상사업의 범위, 심의절차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·시행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○ 대상사업 및 대상규모

- 대 상 :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같음(6개 사업 24종)
- 규 모 : 대상사업으로 15만㎡~30만㎡미만

○ 심의방법 및 심의결정 내용

- 심의결정 :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(동의·보완·반려)

○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구성 : 7인 이상 15인 이하 (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)
- 운영 :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

○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감독

- 연 2회 이상 협의내용 점검 실시,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 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환경, 교통, 재해등에관한 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영향 평가를 받는 사업에서 제외되는 15만㎡~30만㎡미만 규모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이 환경, 교통, 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·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